



대 법 원  
제 1 부  
판 결

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2005. 12. 22. 원본영수 | 인 |
| 2005. . . 판결송달     |   |

사 건 2005다58762 손해배상(기)  
 원고, 상고인 1. A  
 2. B  
 3. C  
 피고, 피상고인 대한민국  
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. 9. 6. 선고 2004나73681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 
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1-06

2005. 12. 22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김지형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강신욱      \_\_\_\_\_

주심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 고현철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양승태      \_\_\_\_\_